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9
----------	------

발의연월일 : 2024. 11. 27.

발의의원 : 박영동 의원,

전홍배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신종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의 정의 및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시행계획, 예방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2차 피해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안 제8조~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性) 기반 폭력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2.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2.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

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그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일부개정, 시행)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4. 10. 16. 일부개정, 시행)

-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2. 13. 일부개정, 2024. 8. 14. 시행)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